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(단체)명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대표자 생년월일	
	대표자 주소		전화번호	
사무소 소재지				

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·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 ·
특별자치도지사 · 특별자치시장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학칙, 정관 또는 그 밖에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.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1부 3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1부 4.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1부 5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(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

